



두엄누리회보 제45호

2007년3월3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헌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유기질(퇴비)비료의 대북비료 병행지원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께 드리는 건의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비료지원 사업은 북한
의 요구에 따라 증수 효과를 단기간에 올
릴 수 있는 화학비료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
다.

이는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북한
토양 내 양분의 불균형으로 다량의 비료 소비
에 이은 다량의 농약 소비로 농업환경은 피해
해지고 생산성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북한도 이를 염려하여 지금 보다는 비교적
비료 수급이 원활하였던 70년대 후반부터 김
일성주석의 교시를 통해 퇴비비료를 많이 만
들어 화학비료와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사료
공급이 부족하여 축산은 거의 붕괴되었으며
토양 양분 공급원인 유기성 자원의 고갈로 토
양 내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여 지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화학비료 사용은 양분의 흡수
가 어렵고 또, 흡수되지 못한 화학비료는 그대
로 유실되어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은 축산업의 발달로 대량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년 간
250여만 톤씩 해양 투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도 생산 가동율이
60%를 밑돌 정도로 재고량이 쌓이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러한 남북한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비료를 화학비료
와 함께 지원하여 북한의 토양은 비옥하게 하
고 남한은 잉여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부
담을 감소시켜 개방화에 앞선 축산물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축산관련 단체(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
회, 대한낙농육우협회, 한국양계협회)와 뜻을
모아 축분퇴비의 병행지원을 건의 하오니 대
북비료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
랍니다.

2007. 3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 회장 김 상 원

상기 내용은 지난 3월19~20일 통일부와 농
림부를 방문하여 전달한 우리협회의 건의문
전문이다.

그동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북비료지원사업에 퇴비비료가 포
함되도록 노력해온 우리 협회는 북한 핵심협
으로 중단되었던 지원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올해 지원물량 중 일부를 퇴비로 채워줄 것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일자별로 간추려 보았다.

**대북비료지원사업
추진사항 경과 보고**

▲ 2월 중 대한 적십자사와 모집된 17,000포 무상 기증 방법에 관해 논의 결과 이왕 지원하려면 25,000포(500톤)정도 규모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물량 모집

▲ 3월7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장재언 대한적십자사 한완상총재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비료 30만톤을 제공하여 줄 것과 비료 종류별 수량을 알려달라고 함.

▲ 3월8일: 주관사인 거래사랑과 대북비료지원 준비위원회 개최 (거래사랑 사무실)하고 이미 준비된 500톤 물량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물량 중 최소 10%이상 퇴비비료로 병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 3월9일: 관계부처 협의에 대비하여 농림부 입장을 병행지원으로 정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협조 요청 (축산순환자원과 방문, 친환경농업과 이메일 발송)

▲ 3월12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회보고를 거쳐 시행된다는 일정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통일부에 제출할 건의서 작성

▲ 3월13일: 2006년1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황진하 국회의원이 통일부에 『대북비료 지원 시 유기질 비료 포함 건의』 공문 발송

- 축산관련단체(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연대지지 서명 작성

▲ 3월14일: 석간 일간지 내일신문 『화학. 유기질비료 함께 줘야』 『북한 토양산성화. 양분불균형 심각』이라는 제하의 기사 보도

▲ 3월15일: 관계부처회의와 국회 보고 절차 없이 지원물량을 화학비료만 설정 하고 화학비료업체는 생산라인 가동 확인

-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 면담

▲ 3월16일: 내일신문 『통일부-비료업체 지원내역 이면 결정』이란 제하의 기사 보도

- 통일부 방문 장관 면담 신청

▲ 3월19일: 통일부에 축산관련단체 연대서명한 건의서 전달 및 축산관련단체 결과 통보, 청와대 제출할 건의서 작성

▲ 3월20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면담 및 청와대 비서실 방문 건의서 전달,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방문 관계부처 회의 시 퇴비비료 병행지원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로부터 퇴비비료의 병행지원을 찬성하는 것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며 북한을 최대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연락을 구두로 받음

▲ 3월22일: 관계부처 회의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선적 6,500톤은 화학비료로만 결정

▲ 3월23일: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에 대한 질의서 제출

내용: ○퇴비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 이유
○북측에 병행지원 의사를 전달한 내용
○북측에서 화학비료만 원하는 이유

▲ 3월28일: mbc뉴스데스크 동행 취재

알림: 상기 내용의 모든 일정을 준비위원인 낙양유기질 김선일 사장님과 거래사랑 정법진 사장님 그리고 김상원 회장님이 찬찬 바쁜 시기 인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몫이 되어 움직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제목: 가축분뇨 자원화의 과제와 대응방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시: 2007. 3. 26 14:00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사)자원순환사회연
대

이 정책토론회는 '07년9월28일부터 시행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
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
회나 다름없는 성격이었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발의로 제정된 이 법
률은 2004년 4월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축산
분뇨 관리, 이용 대책 추진 기획단이 농림부, 환
경부 합동 T/F팀으로 구성되어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이 법에서 관리하던 축산폐
수만 따로 관리하는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주최 기관의 이름으로도 짐작 할
수 있듯이 최종 자원화의 주체인 우리 분야는
초대받지 못하였고 주로 환경관련 단체와 일부
축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법을 제정하고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대책을 내어놓는 등 가
축분뇨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모두 처리할 것
처럼 요란을 떨었었다. 마치 “이제까지 가축
분뇨자원화를 퇴비업체에게 모두 맡겨 보았다
니 처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처리 하여야겠다” 하는 것처럼.

그 결과 이 법률에는 생산자가 퇴비나 액비
제조업체가 아닌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으로 되
어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
는데 있어 같이 상의할 대상이 (사)자원순환
사회연대라니 참 의아하기만 하다. 이(사)자
원순환사회연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쓰
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보인다. 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이 회의 주제인 “가축분뇨
자원화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토론해야 하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가축분
뇨를 원료로 사용해온 퇴비 생산업체는 그동
안 모든 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되
었다. 혹 퇴비업계에서 참견이라도 하려고 하

면 남의 잔치에 기웃대는 거렁뱅이 취급이나
받기 일수였다. 그렇게 자신 있고 가축분뇨
자체가 자원이니 꼭 전문 퇴비업체 아니더라
도 얼마든지 자원화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축산농가가 쓰레기 재활용하는 단체와 상의해
서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어 낼지는 두고 봐
야 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의아할 따름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가
축분뇨관리의 문제점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제도적 측면에
서 올바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조사,
예측, 지원, 보호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 발생량
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과 배출 원단위의 수
정, 관리대상 가축사육규모의 정확한 예측을
강조하였다 ▲시설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해양
투기를 목적으로 한 축사 시설을 개, 보수 할
수 있도록 또다시 지방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자원화 촉진
방향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또 축분퇴
비의 대복지원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왔으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품화해서 지원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요 며칠 사이 축분퇴비의 대
복지료지원을 성사시키고자 뛰어 다니며 정신
없이 바쁜 와중에도 결국은 우리와 관련된 토
론회일 것이라는 생각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하고 보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바빠 움
직이고 있는 것인지 같이 동참해 열심히 노력
하는 축산농가 회원사가 눈에 아른거렸다.

**친환경 육성법령
일부 개정공포**

2006.6.29 친환경육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
정 공포되어 3월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유기 농림산물 재배 방법에서 그동안 사용을 금지 시켰던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이하 “축분비료”라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속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도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기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2004년12월31일 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시행규칙 [별표 3]

2. 유기농림산물 재배방법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퇴비·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속시켜서 사용하되, 과도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로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장형 축분의 사용금지는 없어지게 되었고 퇴비나 그린퇴비는 친환경 농산물의 분류인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체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수입 유박비료에 침식당한 부분은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난감하기만 하

다.

[별표 3]

인증기준(제9조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경축순환농법**”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퇴비 원료용 톱밥수요조사 및 생산능력 조사

일부 업체에서 이물질이 묻어있는 목재 톱밥(불량톱밥)을 사용한다는 소문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는 톱밥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하고 있는 톱밥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을 발송한 양식대로 적어 협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된 업체별 생산능력에 따라 한도내 납품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납품정지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006년 검수량이 집계된 직후인 년 초에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각 기관별 일정이 맞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업체 시설 확인에 이어 한도 이상 납품업체나 그간 증설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니 해당업체는 미리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